

미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소송 발표 번호 19880 / October 25, 2006 년 10월 25일

SEC, 한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수백만 달러 투자 사기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두 명 기소

증권 거래 위원회 대 장 현수, 김 강산, UNUS CAPITAL MANAGEMENT, INC.
및 PEOPLEN INVESTMENT, CORP., 사건 번호. CV 06-06775 CAS (AJWx) (C.D.
Cal.).

미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오늘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40여 명의 한국계 투자자들로부터 약 4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상품을 운용한 두 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가 어제 제출한 고소장(告訴狀)에 따르면 장 현수와 김 강산은 그들 소유의 두 회사를 합법적이며 인가된 회사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SEC의 고소장에 의하면 현재 유명무실해진 그 두 회사, 즉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김씨의 투자자문회사, Unus Capital Management, Inc.와 Unus 사(社)의 지시에 따라 증권거래를 실행하는 증권중개회사로,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장씨의 PeopleN Investment, Corp. 사(社) 역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와 김씨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약속대로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소장에 따르면, 장 현수씨 (39세, 전 Los Angeles, California 거주) 와 김 강산씨 (34세, Anaheim, California 거주)는 장씨가 가져간 250만 달러와 김씨와 Unus 사(社) 가 가져간 50만 달러를 포함한, 고객들이 예약한 투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소송(訴狀)에 의하면, 장씨는 그 외에도 신규 투자자들이 예약한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의 고소장에 의하면 Unus 사(社)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국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장씨와 김씨의 오전

주식시장보고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와 김씨는 관심있는 투자자들이 연락을 하면 Unus 사(社) 와 PeopleN 사(社)가 마치 정식으로 인가 받고 자리가 잡힌 회사인 것처럼 허위로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장씨와 김씨는 PeopleN 사(社)가 뉴욕 증권 거래소(NYSE), 증권 투자자 보호공사 (SIPC), 나스닥 주식 시장(주) (The Nasdaq Stock Market, Inc.) 등, 여러 증권업계 관련 기관에 등록된 회원사 브로커라고 허위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장씨와 김씨는 Unus 사(社)가 캘리포니아주 기업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porations)의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철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Unus 사(社)가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미 연방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 모두 1934년에 제정된 증권 거래법 제10조 (b)항과 규정 10b-5항 이하를 위반하였으며 PeopleN 사(社), 그리고 장씨와 김씨는 또한 주식 사기를 금지한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 제 17조 (a)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소장에 의하면 Unus사(社) 는 투자 자문가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금지한 1940년에 제정된 투자 자문법 제206조 (1)항 및 206조 (2)항을 위반하였으며 장씨와 김씨는 Unus 사(社)의 범법행위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숏장에서는 PeopleN 사(社) 와 장씨가 증권중개회사 등록 조항인 증권 거래법 제15조 (a)항 역시 위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권법 위반 영구금지 명령과 이자를 포함한 부당이익 환수, 그리고 장씨와 김씨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기업국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는 투자자들이 특정 단체안의 친분이나 믿음을 이용한 사기 행위들을 파악하고 그런 사기들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발행했습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발행한 “친분이나 믿음을 이용한 사기: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예방법” 은

<http://www.sec.gov/investor/pubs/affinity.htm>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